

해양수산부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연 월 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항만을 촬영한 동영상의 유포 등 항만시설에서의 보안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드론과 같은 새로운 위협요인에 대응하며 항만보안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심사의 불합격처분 유예절차,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복제·배포의 허가절차,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드론 비행승인 절차, 사전 통보로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공목적의 이용범위 및 법령의 적용을 받는 항만시설 외의 시설을 지정하는 방법 명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 외의 시설을 지정하는 방법(안 제2조 개정)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이 적용되는 항만시설 외의 시설에 대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는 방법(고시)를 명시하는 것임

나.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처분 유예(안 제35조의2 신설)

항만시설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갱신보안심사, 중간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처분의 유예 절차 및 검토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다.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복제·배포의 허가절차(안 제40조의2 신설)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복제·배포를 허가할 때,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보안상의 위협요인을 검토하도록 하여 보안상의 위협요인이 포함·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안 제40조의4 신설)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드론의 항만 내 비행을 승인할 때, 드론 비행 신청서 제출, 항만시설의 보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서류 등을 규정함

마. 국가기관등 드론의 긴급비행(안 제40조의5 신설)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 사전 통보로만 드론 운용이 가능한 공공목적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타 : 1) 입법예고 예정

2) 행정규제 사항 없음

국제항행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하는”을 “지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항만시설 외의 시설이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지정에서 해제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항만명
2. 시설의 명칭 및 주소
3. 시설의 종류
4. 지정 또는 해제 사유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불합격처분의 유예) ①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불합격처분을 유예받고자 하는 항만시설소유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불합격처분 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항만운영 중단으로 인해 항만시설이용자에게 예상되는 피해
2. 보안취약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3. 제2호의 개선방안을 실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보안공백의 해소방안

③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항만시설이용자에게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
2. 보안취약요소에 대한 개선방안의 실효성
3. 보안공백 해소방안의 실효성

제40조의2를 제4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4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하며,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복제·배포 허가절차) ①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복제·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항만시설 촬영결과물 발간·복제·배포 허가신청서를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촬영결과물 발간·복제·배포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의 위협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7일 이내에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관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에 제40조의4 및 제4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4(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 ①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드론 비행 승인신청서를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 비행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드론의 종류·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2. 드론의 항만시설 내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서
3. 드론 비행 안전관리 대책
4. 드론 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대책
5. 그 밖에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③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항만시설의 보안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40조의5(국가기관등 드론의 긴급비행)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

른 드론비행 사전 통보가 적용되는 공공목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재난으로 인한 수색·구조
2. 시설물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해·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안전진단
3. 산불, 건물·선박화재 등 화재의 진화·예방
4. 응급환자 후송
5.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및 구조·구급활동
6. 풍수해 및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점검
7. 테러 예방 및 대응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공공목적과 유사한 공공 목적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만시설 촬영결과물 발간·복제·배포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분	[] 발간 [] 복제 [] 배포(재배포)		
해당 항만시설				
목적				
항만시설 촬영결과물				
내용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 포함 여부			
	항만시설 또는 부두 전체 포함 여부			
	그 밖에 구체적 내용			
형태 / 수량	[] 책자 [] 사진 [] 동영상 [] 그 밖의 형태()			
	수량			
경로 / 배포처	[] 출판 [] 방송 [] 누리소통망 [] 유튜브 [] 그 밖의 경로()			
	배포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 촬영결과물 발간·복제·배포(재배포를 포함한다) 허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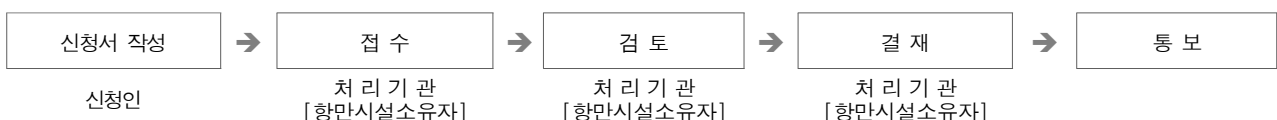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항만시설소유자 귀하

첨부서류	촬영한 결과물의 내용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드론 비행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드론	종류		형식
	자체 무게	길이	이착륙형식
	성능	운용한계	조작방법
	신고번호		제작번호
비행계획	일시		
	비행 장소(항만시설)		조종 장소
	비행 목적		
	비행 방법		비행 횟수
	경로/고도		
조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격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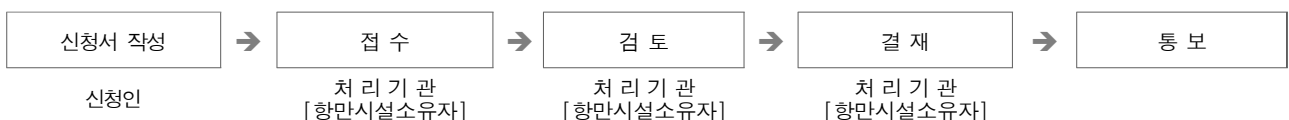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드론 비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항만시설소유자 귀하

첨부서류	1. 드론의 종류·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2. 드론의 항만시설 내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서 1부. 3. 드론 비행 안전관리 대책 1부. 4. 드론 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 대책 1부. 5. 그 밖에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계획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항만시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외의 시설로서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항만시설) ① ----- ----- ----- ----- ----- ----- ----- - 지정하여 고시하는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항만시설 외의 시설이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지정에서 해제해야 한다.
<u><신설></u>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항만명
	2. 시설의 명칭 및 주소
	3. 시설의 종류
	4. 지정 또는 해제 사유
<u><신설></u>	제35조의2(불합격처분의 유예) ①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불합격처분을 유예받고자 하는 항만시설소유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신 설>

장에게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불
합격처분 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
다.

1. 항만운영 중단으로 인해 항만
시설이용자에게 예상되는 피해
2. 보안취약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3. 제2호의 개선방안을 실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보안공백
의 해소방안

③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서를 제
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항만시설이용자에게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
2. 보안취약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의 실효성
3. 보안공백 해소방안의 실효성

제40조의2(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복제·배포 허가절차) ①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복제·배포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
의 항만시설 촬영결과물 발간·복
제·배포 허가신청서를 해당 항만

제40조의2(무기 반입·소지 허가)
절차)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무기 반
입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
게 무기 반입·소지 허가를 신청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호 업
무 수행 등의 사유로 사전에 허가
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입
전까지 그 사실을 미리 유선 등으
로 통보하고, 반입 후 3일 이내에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1. ~ 5. (생략)

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촬영결과물 발간·복제·배포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의 위협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7일 이내에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관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0조의3(무기 반입·소지 허가)
절차) ① 법 제33조제3항-----

[illegible]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신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의4(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 ①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드론 비행 승인신청서를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 비행 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드론의 종류 · 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2. 드론의 항만시설 내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서
3. 드론 비행 안전관리 대책
4. 드론 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대책
5. 그 밖에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③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항만시설의 보안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신 설>

제40조의5(국가기관등 드론의 긴급 비행)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드론비행 사전 통보가 적용되는 공공목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재난으로 인한 수색·구조
2. 시설물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해·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안전진단
3. 산불, 건물·선박화재 등 화재의 진화·예방
4. 응급환자 후송
5.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및 구조·구급활동
6. 풍수해 및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점검
7. 테러 예방 및 대응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공공목적과 유사한 공공목적